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58 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기표·김준형

박홍배 • 신정훈 • 이학영

전현희 · 정성호 · 채현일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.

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,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).

법률 제 호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8조제3호에도"를 "제28조에도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환경부장관이 경유자동차 외에 대체 자동차 수급 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

제28조의3 전단 중 "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(수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(이하 "자동차제작자"라 한다)에게 제28조"를 "다음"으로, "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"을 "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하며, 같은조 후단 중 "자동차제작자는"을 "자는"으로 하며, 같은조에 각 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동차를 제작(수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(이하 "자동 차제작자"라 한다)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 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 록 요청하는 경우

2.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제28조제1호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대체 자동 차의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

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 버스를"을 "같은 용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8조의2(특정 용도 자동차로 제28조의2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 한 특례) 제28조제3호에도 불 한 특례) 제28조에도-----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. _____ <신 설> 1. 환경부장관이 경유자동차 외 에 대체 자동차 수급 등이 어 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1. • 2. (생략) 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제28조의3(특정 용도 자동차로 제28조의3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 한 협조 요청) 환경부장관은 한 협조 요청) -----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------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----동차를 제작(수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(이하 "자 동차제작자"라 한다)에게 제28 -----자는-----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 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

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<u>자동</u> <u>차제작자는</u>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<u>신</u> 설>

<신 설>

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

제3조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 례)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 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

- 1. 자동차를 제작(수입을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(이하 "자동차제작자"라 한다)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
- 2.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제28 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 한 대체 자동차의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

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

제3조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 례) ① -----

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. 다만, 이 법시행 전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~ 4. (생략)
- ② (생략)

<u>.</u>
1
<u>같은 용도로</u>
- .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